개발제한구역내 축사시설면적 축소에 대한 협회활동

이 혜 영
본회 조직지도부

지난 4월 26일 건설교통부에서는 현행의 축사시설 면적을 「1,000제곱미터 이하」에서 「300제곱미터 이하」로 하겠다는 입법예고를 하였다.

그러나 우리협회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지난 7월 1일자로 공포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하면 축사의 규모를 현행과 같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상수원과 환경 등의 보호를 위해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화성제외)) 및 부산권(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서의 축사규모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축산업은 농축산업 선진국에 비해 생산기반 취약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따라서 농축산물이 완전개방된 상태인데다 2001년부터는 생우(生牛)마저 개방되는 상황에서 규제완화 및 전업화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종 지원정책 등으로 전업농가를 육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업규모 이하로 축사를 건축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모순된 정책일 것이다.

축종별 전업규모 축사시설면적은 정부가 인정한 축산표준설계도를 기준할 때 최소한의 면적이 다음과 같이 필요하다.

- 젖소 50두(착유우30두, 육성우20두) : 1,240.6제곱미터(375.3평)
- 한우비육우 80두 : 959제곱미터(290.1평)
- 한우번식우 40두 : 772.4제곱미터(233.6평)
- 한우번식·비육일관 사육 50두(번식우33두, 비육우17두) : 841.7제곱미터(254.6평)
- 비육돈사(모돈100두 규모) : 859.3제곱미터(260평)

또한 현행의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도 축사시설면적은 1,0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낙농여건과 정부정책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에서는 불법전용 사례를 근절, 상수원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내의 축사시설면적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낙농업의 특성상 원유의 수송, 원료사료의 구입 등의 문제로 목장은 접근성이 용이한 도시근교에 위치할 수 밖에 없었고, 시장경쟁력 확보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전업농 수준으로 규모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제일의 낙농가 분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축사시설면적의 규제로 인하여 낙농

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구제역 발생, 모조분유쿼터 해제, WTO협상, 2001년 쇠고기 완전개방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낙농가들에게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더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일 것이다.

또한, 새로 낙농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부지확보 등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축사의 신축시 별도의 설계비가 추가로 소요되어 낙농경쟁력을 악화시켜 일부농가에 지나지 않는 용도변경의 위법행위를 묵묵히 우유 및 쇠고기 생산에 전념하는 대다수의 농가에게 어려움을 전가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

협회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하여 축사시설면적을 현행과 같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해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건설교통부와 농림부에 건의하였다.

또한 농가에서도 축사시설면적을 30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하는 것은 정부가 전업농 육성을 포기하는 정책이라면서 1,000kg의 원유를 생산하는 규모로 착유두수가 40두 정도가 되면 건유우, 육성우를 모두 포함하여 전체 두수가 적어도 70두는 되어야 안정적인 목장경영이 가능해지며, 70두 정도의 목장이라면 젖소 한 마리당 약 7.5평(24.7제곱미터)씩 최소한 약 525평(1,729제곱미터)은 되어야 무리없는 목장 경영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축사면적을 넓혀주지는 못할망정 90평(300제곱미터)이하로 축소하라는 것은 쪽박을 깨는 행위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현행대로 축사시설면적을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수도권 및 부산권에서의 축사시설면적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축사의 불법전용 때문에 수도권 및 부산권에서의 축사시설면적을 축소한다는 방안이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강력한 지도·단속을 통해 충분할 것이다.

현행법상 축사의 허가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용도변경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단속을 강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한다면 축사의 불법전용을 근절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없이 단순히 축사시설면적을 축소함으로써 불법전용의 규제를 한다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축산업을 하는 농가에게 축산업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미 수백년의 낙농역사를 가진 선진국 사례를 통해 볼 때 산지중심의 낙농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WTO가 허용하는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도입 등으로 낙농가의 자발적인 유인대책이 선행되면서, 도시근교 낙농의 통제강화가 병행되어야만 현실적인 정책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